해외채권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

국민연금은 외화표시 한국채권을 포함한 해외채권에 대하여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금융기관과 거래를 수행함

(1) 국내주식 거래가능 증권사 중 일반거래증권사로 신청한 증권사

(2) 선진시장 및 이머징 아시아(한국시장제외 MSCI 분류기준)에 모두 거래 가능한 증권사

(3) 공단 주문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내역 송수신이 가능한 증권사

(4) 공단 결제정보 매칭시스템을 사용하여 매매체결내역 및 결제정보 송수신이 가능한 증권사

(5) 담당인력을 총 9인 이상 보유한 증권사 (거래담당인원(영업) 2인, 결제담당인원 1인, 지역.유형별 거래담당인원(트레이더) 각각 1인 이상)